제 2016-06 호

#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필증

1. 상호(명칭): (주)피앤에이

2. 성명(대표자): 대표이사 (생년월일:

3. 주소(사업장소재지):

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미양로 660

(전화번호: 07050294807 )

4.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내역

가. 관리대상시설의 종류 및 명칭: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알코올 및 제2석유류

나. 오염물질의 종류 및 저장용량: 저장시설:총2기 총용량:119,800.00 &

다. 그 밖의 주요내용: 알코올류 19,800L, 제2석유류 100,000L

5.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내역

가. 방지시설의 종류 : 바닥 콘크리트

나. 설치내용 :

다. 그 밖의 주요내용:

6. 누출검사대상시설 여부

[□] 해당 [□] 해당하지 않음 [■] 확인을 신청하지 않음

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 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0조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(변경)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2016년 5월 9일

경기도 안설심하는

## <변경 사항>

일	자	내용	확	인

## <행정처분일자>

일	자	내 용	확	인

### <저장시설>

시설명	오염물질	용량(단위)	수량(기)	완공일	시설형태
옥내저장소	기타 (알코올)	19,800.00 l	1		옥내저장소
옥내저장소	제2석유류 (탄화수 소)	100,000.0	1		옥내저장소

### <참고사항>

일 자	내용	확	인
2017-02-22	토양오염도검사 - 적합	정성	!수